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
	배포일시	2019. 12. 13.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건축안전팀	담당 자	• 팀장 홍성준, 사무관 김부병, 주무관 신현규 • ☎ (044) 201-4988, 4992	
보 도 일 시		2019년 12월 1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15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.

- 20일부터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

-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‘엑시트’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「건축법 시행령」 및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①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
 -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, 방범,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겨 두는데, 영화 ‘엑시트’에서처럼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.
 -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*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**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,000㎡ 이상인 공동주택, 다중이용건축물

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.

*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자동 개방되어 옥상으로의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

** 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든 비행장

현 행		개 선
대상 건축물	30세대 이상 공동주택	① 옥상광장 설치 건축물 * 5층 이상인 층을 종교시설, 판매시설 등 용도로 쓰는 건축물
		② 옥상 헬리포트 설치 건축물 * 11층 이상의 건축물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㎡ 이상인 건축물
		③ 1,000㎡ 이상인 공동주택 *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통상 1,500㎡ 규모
		④ 다중이용건축물 * 16층 이상 또는 문화·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 등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5천㎡ 이상인 건축물

②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 강화

○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(200㎡ 이하)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.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0일부터 '20년 1월 30일까지(40일간)이고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'20년 4월경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
○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(전화번호: 044-201-4988, 4992 팩스: 044-201-5575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김부병 사무관(☎ 044-201-498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